

의안번호	2219262
의 퇴 인	이개호 의원
회 답 일	2026. 9. 1.
추계번호	26A2895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(재원과 지원금의 결정)	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·규모·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함. 이 경우 지원금의 결정기준에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함(제2항 후단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13조(재원과 지원금의 결정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안 제13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기준에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¹⁾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, 특별지원사업, 홍보사업 등이 있음(법 제10조제1항 각 호²⁾)

1) 안 제13조의2의 사업자지원사업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수행하므로 개정안에 따라 단가가 인상되더라도 국가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

2)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지원사업의 종류 등)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본지원사업 :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
2. 특별지원사업 :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·시·군 및 지구(이하 “지방자치단체”라 한다)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
3. 홍보사업 : 전력사업(電力事業)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4.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, 환경·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(조사·연구 활동 등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, 대상 지역, 시행 기간,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의 단가 등 결정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, 개정안에 따라 결정기준에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³⁾
 - 예를 들어,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계산식과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는 다음과 같음

※ 계산식: 전전년도 발전량(kWh) ×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(원/kWh) + 설비용량(MW) × 발전원별 설비용량 단가(만원/MW)

[표 1]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
(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)

(단위: 원/kWh, 만원/MW)

발전원	원자력	유연탄 화력	무연탄 화력	유류 화력	가스 화력	양수	수력	조력	신재생 에너지
지원금 단가	0.25	0.18	0.3	0.15	0.1	0.2	0.2	0.2	0.1
설비용량 단가	—	—	—	—	—	50	500	—	—

자료: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

- 다만, 현시점에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원금 결정기준이 정해지는 시점과 이후 각 발전원별 발전량을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결정기준을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(2018년 1월 1일 이후 현행 단가 유지), 개정안 부칙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더라도 새로운 결정기준이 정해지는 시점은 특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단가를 일률적으로 2% 인상한다고 가정하면 2026년 기본지원사업 예산(1,277억원)은 약 23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

3) 다만, 특별지원사업 등의 경우 실제 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